

의안
번호

323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4. 09. 04.

전문위원 김 동 성

1. 제안경위

가. 제 출 자 : 성북구청장

나. 의안번호 : 제323호

다. 제출일자 : 2024. 08. 13.

라. 회부일자 : 2024. 08. 28.

2. 제안이유

-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국방에 봉사하는 예비군의 처우개선 및 기본적인 권리를 강화하고자,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을 지원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예비군의 사기진작과 권리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(안 제1조)

-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해 차량 운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기 진작에 기여

나.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(안 제2조)

- 지원의 대상이 되는 훈련장, 예비군대원, 차량에 대한 정의

다. 차량운행 비용의 지원(안 제3조)

- 예비군대원들의 입소편의를 위하여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,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
「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조치

다. 입법예고

- 기 간 : 2024. 07. 11. ~ 2024. 07. 31.
- 의 견 : 의견 없음.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제정안은 관내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응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임.
- 근거 법령을 살펴보면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¹⁾에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,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²⁾ 제1항제5호와 국방부령인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³⁾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음.
- 이에 예비군대원의 입·퇴소 시 교통편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「예비군법」 등 관련 규정의 목적 및 취지에 비추 볼 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부합한 것으로 사료 됨.

1) 「예비군법」 제14조의3(예비군의 육성 및 지원 책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직장예비군이 편성된 직장의 장은 그 관할구역 또는 그 직장의 예비군을 육성·지원하여야 한다.

② 예비군의 육성·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구역 및 직장 단위로 방위협의회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그 구체적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2) 「예비군법 시행령」 제32조(예비군의 육성·지원) ① 법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6. 11. 29.>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3.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
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 간의 유대 강화 및 홍보, 그 밖에 예비군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) 「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」 제5조(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범위) 영 제32조제1항에 따른 예비군의 육성·지원에 관한 사항의 구체적인 범위는 별표와 같다

□ 주요내용

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, 안 제2조에는 성북구에 거주하여 소집통지서를 받은 예비군과 훈련장을 관장하는 부대 제56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⁴⁾까지 차량을 지원하는 차량에 관하여 용어를 정의하였으며,
- 안 제3조에서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 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.
- 이와 관련 2024년 8월 현재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임.

「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조례」 제정 현황(2024.8.현재)

■ 서울시 : 총 22개 자치단체

자 치 단 체 명	비 고
성동, 광진, 동대문, 중랑, 도봉, 은평, 서대문, 마포, 양천, 강서, 용산 영등포, 동작, 서초, 강남, 송파, 구로, 관악, 금천, 강동, 노원, 중구	성북, 종로, 강북, (준비중 : 3개구)

□ 종합의견

- 이상과 같이 본 제정안은 상위법령인 「예비군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「예비군 육성 지원에 관한 규칙」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바에 따라 성북구 예비군대원들의 훈련 입소 편의, 사기진작에 기여를 목적으로 훈

4) 제56사단 노고산 예비군 훈련장까지 19km(경기 고양시 덕양구 지축동 53-1), 대중교통 이용시 최소 2번 환승, 1시간 20분 소요(성북구청 기준)

런장 차량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 사료 됨.

- 참고로, 2023년 12월 서울시는 자치구에 예비군 훈련 차량운행 지원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를 요청한 바 있으며, 2025년도부터 서울시 50% : 성북구 50% 매칭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.

25년 성북구 예비군 임대버스 지원 소요예산

연간훈련대상(명)				소요예산(원)		
합계	5~6 년차	미지정 *4일	이월 보충	총 소요예산	자치구예산 (50%)	서울시예산 (50%)
15,517	4,641	7,576	3,300	93,100,000	46,550,000	46,550,000

예비군 육상지원에 관한 규칙 [별표]

■ 예비군 육성·지원에 관한 규칙 [별표] <개정 2016. 11. 30.>

예비군 육성·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(제5조 관련)

1.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·운영 및 유지
 - 가. 사무실의 확보 및 운영·유지의 지원
 - 나. 사무실 신·개축 및 보수의 지원
2. 예비군부대의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의 지원
 - 가. 사무·통신장비 확보 및 운영의 지원
 - 나. 사무실 집기·비품의 지원
 - 다. 상황실 상황판 제작의 지원
3.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 유지의 지원
 - 가. 훈련장 진입로의 부지 확보 및 포장과 안내판 설치의 지원
 - 나. 훈련장 안의 예비군 후생·복지시설 설치의 지원
 - 다. 예비군훈련 보조시설 설치·유지의 지원
4.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 및 전투시설의 지원
 - 가. 급식·수송·통신·의료·장비·물자의 지원
 - 1) 관할구역 안에서 작전 중인 지역예비군에 대한 급식의 지원
 - 2) 차량·선박의 확보와 인원·물자 수송의 지원
 - 3) 지역방위작전용 간이 통신장비 및 시설의 확보 및 운영의 지원
 - 4) 구급약품 확보의 지원
 - 5) 개인 장구류 등 장비·물자 확보 및 유지
 - 나. 전투시설의 지원
 - 1) 진지구축 자재·도구의 확보 및 유지의 지원
 - 2) 무기고·탄약고 및 장비고 등의 창고 설치 및 유지
 - 3) 관측소 및 검문소용 시설 지원
5.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양양, 민·관·군의 유대강화 및 홍보 그 밖의 필요한 사항
 - 가. 예비군 후생·복지장구 확보의 지원
 - 나. 작전중인 예비군에 대한 위로·격려
 - 다. 예비군의 지역방위작전 동원의 지원
 - 라. 지역주민 신고체제 확립의 지원
 - 마.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의 지원
 - 바. 예비군의 날 행사 및 예비군관련 지역행사의 지원